

# 학생연구자 산재보험제도 안내

## 1 적용대상

- 「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연구실안전법”이라 함)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<sup>①</sup> 중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<sup>②</sup>에 참여<sup>③</sup>하는 학생연구자<sup>④</sup>

① (「연구실안전법」 상 연구활동종사자) 과학기술분야\*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·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원·대학생·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

\* ‘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전공분류’ 대분류 상 공학·자연·의약계열과 일부 교육계열(공학·자연)을 포함

② (연구개발과제) 국책연구과제, 민간 위탁 연구과제 및 교수 개인 연구과제 등 학생이 교수로부터 부여받은 연구과제를 포함

- 다만, 학생 본인의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는 제외

③ (연구개발과제에 참여)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에 참여뿐만 아니라 신규 또는 후속 연구과제를 위한 연구활동까지 포함

- 연구원 등 정식 등록 및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음

④ (학생) 「연구실안전법」에 따라 대학·연구기관에 두는 학위과정 (전문학사~박사) 중에 있는 자(재학생)뿐만 아니라

-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과 휴학생 및 수료생\*까지 포함

\* 학위과정에 필요한 졸업학점은 취득하였으나 학위논문을 통과하지 못한 자로서 학위논문을 통과한 졸업생과 다름

## 〈산재보험법령 규정 내용〉

-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 ②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(이하 이 조에서 “학생연구자”라 한다)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
-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(학생연구자의 범위)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 1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에 두는 학사·석사·박사학위과정(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)에 재학 중인 사람(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)
  2. 제1호에 따른 학사·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·박사학위과정으로의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·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·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

## 2

## 보험가입자 및 학생연구자 명단 관리 등

### □ 보험가입자

- 산재보험법 제123조의2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- 학생연구자가 소속(연구개발과제에 참여)한 연구실안전법 제2조 제1호의 대학·연구기관 등을 보험가입자로 적용
  - \*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기술대학, 대학원, 대학원대학, 기능대학, 과학기술원, 국·공립 연구기관, 기업부설연구소 등
  - \*\*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(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)은 보험가입자 비해당

## □ 학생연구자 명단 관리(대학·연구기관 등이 신고)

- (명단 신고) 대학·연구기관 등은 매학기가 시작하는 달(3월, 9월)의 다음 달 15일[1학기(3월) 4월 15일, 2학기(9월) 10월 15일]까지 “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”를 제출

- 기존 명단 신고 당시 학생연구자가 누락된 경우 명단신고서를 추가 제출  
<학기별 산재보험 적용기간>

- 1학기(4월 15일까지 신고): 3.1. ~ 8.31.
- 2학기(10월 15일까지 신고): 9.1. ~ 다음 연도 2월 말일
- ※ '22.1.1. 제도 시행 당시의 학생연구자의 적용기간은 '22.1.1.~2.28.까지임

- ※ 학사일정이 위와 같지 않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도 상기 일정에 따라 신고
- ※ 동일 대학 내 학생 1인이 다수 연구과제에 참여하더라도 1인으로 신고

- (명단 변경 신고) 매학기 신고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(추가 해당·비해당\*)된 경우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

- \*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·변경·중단·해약, 학적 변동, 질병, 개인사정 등으로 학기 중에 과제에 신규 참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등에 신고

- 학생연구자 해당 여부 및 해당일/비해당일\* 등 신고

- \* (비해당일) 학생연구자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의 다음 날

- (정보 변경·정정 신고) 성명, 주민등록번호, 학과명, 휴대전화번호, 학위과정, 해당(비해당)일이 착오신고 된 경우에 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

- (정보 취소 신고) 명단(변경)신고 당시 학생연구자가 아닌 사람을 착오 신고하여 취소할 경우에 신고

## □ 학생연구자 명단 관련 신고 방법

- 대학·연구기관 등은 ‘학생연구자 명단 신고’, ‘학생연구자 명단 변경 신고’ 등을 아래의 방법으로 전자 신고(상세내용은 붙임3 참조)

- 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토탈서비스’(https://total.comwel.or.kr)에서 ‘사업장 → 민원접수/신고 → 학생연구자’ 경로로 들어가 해당 민원 신고

## □ 보험관계의 성립

- 대학 등의 기존 산재보험관계와는 분리하여 학생연구자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고 관리번호\*를 부여

\* 별도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기존 관리번호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관리번호 신규 부여 요청 후 명단 신고 요망

## 3 보험료 산정 및 징수

### □ 보험료 산정

$$1인당 월 보험료 = 기준보수액 \times 산재보험료율$$

- (기준보수액)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

※ '22.1.1.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12월 31일까지)에 고시 변경(예정)

#### <기준보수액 고시>

구분	보수액(월)	평균임금(일)
박사과정, 석·박사통합과정	1,250,000원	41,660원
석사·전문기술석사과정, 학·석사통합과정	1,000,000원	33,330원
학사과정, 전문학사과정	300,000원	10,000원

- (산재보험료율)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적용받고 있는 요율 적용

- 대학 및 연구기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'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'으로서 7/1000(출퇴근재해요율 포함, '22년 기준)을 적용
- 국·공립 대학 및 연구기관의 경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'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'으로 적용하지 않고, '전문·보건·교육·여가관련 서비스업 (세목: 교육서비스업)'으로 별도 적용

※ 대학 등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수지율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인 경우 학생연구자도 동일 요율 적용(상세 요율은 관할지사에 문의)

**□ 보험료 부담 및 납부** ※ 별도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하지 않음

- 보험료는 대학 등이 전액 부담하며, 해당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  - 반기별 명단 신고에 따라 신고한 달(4·10월)과 그 전달(3·9월) 보험료(2개월)를 5·11월 10일까지 일시에 납부

<4·10월 통상적 명단 신고에 따른 보험료 납부기한>

귀속월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납부기한	2.10.	3.10.	5.10.		6.10.	7.10.	8.10.	9.10.	11.10.		12.10.	1.10.

## 4 산재 보상 기준

**□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**

- 학생연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일반근로자의 기준을 준용
  - 업무수행 행위는 연구실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와 관련된 연구활동으로 한정
    - ※ 학업차원의 실험·실습, 학생 본인 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님

**□ 보험급여 지급 기준**

-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더라도 고용부 고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, 직업재활급여 중 직장복귀 지원금 등은 부지급
- 이 외 장해급여,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

**< 학생연구자 관련 법령 >**

산재보험법 제123조의2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 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.

- ②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 중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(이하 이 조에서 “학생연구자”라 한다)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 관계의 성립·소멸 및 변경, 보험료의 산정·신고·납부, 보험료나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⑤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학생연구자에게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 또는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54조, 제56조제2항, 제67조 및 제6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학생연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1조의2(학생연구자의 범위)** 법 제123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”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1.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에 두는 학사·석사·박사학위과정(전문학위 및 통합된 학위과정을 포함한다)에 재학 중인 사람(휴학 중이거나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2. 제1호에 따른 학사·석사학위과정을 마치고 석사·박사학위과정으로의 입학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학사·석사학위과정에서 수행하던 연구개발과제를 석사·박사학위과정의 입학 전까지 계속 수행하는 사람

**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5(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)** ①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(이하 이 조에서 “학생연구자”라 한다)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,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 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한다.

- ②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**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2(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·납부 등)** ①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·연구기관등(이하 “대학·연구기관등”이라 한다)은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학생연구자(이하 “학생연구자”라 한다)의 명단을 적은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학생연구자명단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매년 두차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3월 31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: 4월 15일
- 2. 9월 30일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 : 10월 15일

- ② 대학·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학생연구자 명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학생연구자명단변경신고서에 학생연구자의 변경사항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단위 보수액에 해당 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.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해당 월의 중간에 학생연구자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한 그들의 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- ④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과·징수, 고지의 내용 및 절차는 법 제16조의2제1항,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<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102호) >**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- 102호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 5제1항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의2제4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12월 30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**I.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**

(단위: 원)

구 분	보수액 (월)	평균임금 (1일)
학사 학위 과정 (전문학사 과정을 포함한다)	300,000	10,000
석사 학위 과정 (전문기술석사, 학·석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)	1,000,000	33,330
박사 학위 과정 (석·박사통합과정을 포함한다)	1,250,000	41,660

**II. 행정사항**

**1. 시행일**

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2. 재검토기한**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참고 2 민원서류 서식

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·산재보험 토털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[별지 제55호의2서식] <신설 2021. 12. 31.> 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###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서(      년 □1월 · □3월 · □9월)

※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: 5일
------	-----	----------

사업장관리번호	
명칭	전자우편주소
소재지	우편번호
전화번호	팩스번호
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
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학과명	학위과정 부호	휴대전화번호
1					
2					
3					
4					
5					

※ 학위과정 부호: 1(박사과정, 석사·박사통합과정), 2(전문기술석사과정, 석사과정, 학사·석사통합과정), 3(전문학사·학사과정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#### 작성방법

1. 학생연구자의 명단은 다음 각 목의 제출 기한일 기준에 따라 작성합니다.
  - 가. 1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: 2월 15일까지 제출(2022년에만 해당됨)
  - 나. 3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: 4월 15일까지 제출
  - 다. 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 명단: 10월 15일까지 제출
2. 학생연구자의 명단은 휴학생·수료생 및 졸업 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고 상위 학위과정의 첫 번째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작성하며, 이러한 사람의 학위과정은 수료 또는 졸업 직전의 학위과정을 적습니다. 예를 들어, 석사과정 수료 후 대학 등에 연구생으로 등록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은 석사과정으로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<sup>2</sup>) 또는 중질지(80g/m<sup>2</sup>)]



## 학생연구자 정보 변경·정정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	처리기간 3일	
사업장관리번호						
사업장명					전화번호	
소재지					FAX번호	
연번	성명	주민등록번호	변경 내용			
			변경·정정시작일	부호	변경 전	변경 후

**[변경부호]**

1. 성명    2. 주민등록번호    3. 학과명    4. 휴대전화번호
5. 학위과정(박사·석박사통합과정, 석사·전문기술석사·학석사통합과정, 학사·전문학사과정)
6. 학생연구자 해당일    7. 학생연구자 비해당일

※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기간: 3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(3.1. ~ 8.31.), 9월 말 기준 학생연구자(9.1. ~ 다음 연도 2월 말)

위와 같이 학생연구자 정보 변경·정정을 신고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신고인(대표자) :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**작성방법**

‘변경·정정시작일’란에는 기존에 학생연구자 명단 또는 명단 변경 신고 당시의 학생연구자 해당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예) ○○○○년 3월(1학기)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로 해당일을 ○○○○년 3월 1일로 신고하였으나, ○○○○년 4월 1일로 정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·정정시작일은 ○○○○년 3월 1일로 기재

예) ○○○○년 9월(2학기) 학생연구자 명단 신고 후 명단 변경 신고로 비해당일을 ○○○○년 9월 30일로 신고하였으나, ○○○○년 10월 1일로 비해당일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·정정시작일은 ○○○○년 9월 1일로 기재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<sup>2</sup>(재활용품))

